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636

발의연월일: 2025. 1. 20.

발 의 자:김승원·박선원·박정현

김문수 · 이광희 · 박해철

임호선 • 한준호 • 서미화

이재강 · 서영교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(行狀)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,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는 수용 중인 사람이 어떠한 죄로 형을 선고받았는지는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현재의 행상만을 기준으로 하는데,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와 같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 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 가석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사 회적 목소리가 높음.

이에 현행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(안 제72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석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당시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2조(가석방의 요건) ① 징역이	제72조(가석방의 요건) ①
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	
람이 행상(行狀)이 양호하여 뉘	
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	
은 20년, 유기형은 형기의 3분	
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	
가석방을 할 수 있다. <u><단서</u>	
<u>신설></u>	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
	편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
	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
	<u>하다.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